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201374]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0.10.15]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http://oppa-coffee.com>

oppacoffee.official@gmail.com

OPPA COFFEE(오피피에이 커피)

정 보 공 개 서

(주)엘리얼티개발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식회사 엘리얼티개발]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334번길 48, 105호]

[대표전화번호 1670-5815]

[대표팩스번호 051)624-7041]

[담당전화번호 1670-5815]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엘리얼 티개발	OPPA COFFEE (오피피에이 커피)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334번길 48, 105호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7.03.14	2017.03.29	장서응	1670-5815	051-624-7041
	법인등록번호	180111 - 1084176	사업자등록번호	377-86-00734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	장서응	OPPA COFFEE (오피피에이 커피)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334번길 48, 103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장서응	1670-5815	051-624-7041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OPPA COFFEE(오피피에이 커피)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OPPA COFFEE (오피피에이 커피)	
상 호	OPPA OO점	
상표(서비스표)		출원번호 : 40-2019-0074266 공고번호 : 40-2021-0147797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①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518,925	498,096	20,829	754,218	-58,805	-79,835
2022년	200,320	219,425	-19,105	335,588	-40,477	-39,934
2023년	157,419	210,371	-52,952	310,586	-33,892	-33,847

②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장서웅	대표	2017.03. ~ 현재	대표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 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0	7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 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OPPA COFFEE (오피피에이 커피) 상표서비스권	통상 사용 권	등록결정 2022.02.15.	출원번호 : 40-2019-0074266 공고번호 : 40-2021-0147797	장서응	2032.03.25.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개설하는 경우 가맹목적범위 내에서 지식재산권 사용을 허용합니다. 만약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OPPA COFFEE(오피피에이 커피) 가맹사업 현황

1. OPPA COFFEE(오피피에이 커피)을 시작한 날: 2019년 7월 23일

OPPA COFFEE(오피피에이 커피)가 가맹점을 시작한 날은 2019년 7월 23일입니다.

2. OPPA COFFEE(오피피에이 커피) 연혁

	영업표지	대표자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엘리얼티개발	OPPA COFFEE (오피피에이 커피)	장서응	2019.07.23 ~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334번길 48, 105호

3. OPPA COFFEE(오피피에이 커피) 업종

영업표지	업종	
OPPA COFFEE(오피피에이 커피)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커피	커피 등 음료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OPPA COFFEE(오피피에이 커피)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8	8	0	11	11	0	11	11	0
부산	5	5	0	5	5	0	5	5	0
대전	1	1	0	1	1	0	1	1	0
경남	2	2	0	4	4	0	4	4	0
경기	0	0	0	1	1	0	1	1	0

5. 바로 전 3년간 OPPA COFFEE(오피피에이 커피)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6	5	1	2	0	8
2022	8	3	0	0	2	11
2023	11	0	0	0	1	11

6. OPPA COFFEE(오피피에이 커피)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해당사항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OPPA COFFEE(오피피에이 커피)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④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11	126,675	9,286	300,289	39,671	60,053	2,426	
서울	-	해당없음						
부산	5	143,565	16,920	233,935	39,671	85,906	12,326	
대구	-	해당없음						
인천	-	해당없음						
광주	-	해당없음						
대전	1	해당없음						5곳미만
울산	-	해당없음						
세종	-	해당없음						
경기	1	해당없음						5곳미만
강원	-	해당없음						
충북	-	해당없음						
충남	-	해당없음						
전북	-	해당없음						
전남	-	해당없음						

경북	-	해당없음						
경남	4	해당없음						5곳미만
제주	-	해당없음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상의 매출액과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한 배달매출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8. OPPA COFFEE(오피피에이 커피)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OPPA COFFEE(오피피에이 커피)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1	1,031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연도	구분	금액	사용처	기타
2023	해당사항 없음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12 (대연동, 21세기센츄리시티건물)	051-627-9285 (내선518)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기업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하며, 계약 시 보다 구체적인 예치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방법	설명
인터넷뱅킹	- 인터넷뱅킹 가입 선행 필수 - 이용방법 : 개인(기업)인터넷뱅킹 접속 → 부가서비스 → 프랜차이즈 가맹금 예치서비스
직접방문	- 기업은행 대연동지점 방문 후 [프랜차이즈 가맹금 예치 문의]

귀하는 또한 [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OPPA COFFEE(오피피에이 커피)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외장공사 및 내부 옵션공사, 별도공사, 각종 인·허가 비용, POS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①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0,000				
개점비	5,000	가맹 계약과 동시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 반환 가능	가맹점 모집과 오픈을 위해 실제 소요된 비용은 반환불가 - 가입비(개점비의 25%) - 입지분석 또는 점포실사 (개점비의 25%) - 오픈·운영을 위한 정보제공과 컨설팅 (개점비의 50%)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사후 개점비로 전환)
제조/ 경영 교육비	5,000		교육시작 1일 이전 계약해지시 반환 가능	교육 개시 이후 반환불가	

- ②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지만, 가맹점사업자의 매입 증가로 보증금을 증액해야할 사유가 있으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2,000			
계약이행 보증금	2,000	가맹 계약과 동시	채권 미지급 / 가맹본부 공급 물품 파손 / 계약종료 후 조치의 미이행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존 채무, 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을 상환

- ③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합계	12,000
개점비	5,000
제조 교육비	5,000
보증금	(부가세 없음) 2,000

④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기준 : 33㎡,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49,800				
기계설비	가맹본부	19,800	-	주문 전 100%	상품 발주 전 계약취소	커피머신, 그라인더, 제빙기, 온수기, 테이블냉장고, 더치기구, 더치그라인더 등
주방용품	가맹본부	3,000	-	주문 전 100%	상품 발주 전 계약취소	바스폰, 베이스통, 스팀피쳐, 전자저울, 템퍼 등 주방용품 일체
POS시스템	협력업체	렌트	-	-	상품 발주 전 계약취소	협력업체와 렌트계약
초도물품	가맹본부	3,000	-	개점 3일전 100%	상품 발주 전 계약취소	원두, 시럽, 소스, 파우더, 테이크아웃 물품 등
인테리어	계약업체	19,000	1,900	계약시 60% 중도금 30% 완공시 10%	공사 전 계약취소 (단, 소요된 비용은 반환불가)	테이크아웃형 매장 내장공사 (벽체공사, 바닥공사, 천정공사, 바닥공사, 설비공사, 전기공사등)
간판 및 내·외부 사인물	가맹본부	5,000		발주 전	제작 전 계약취소	전면간판 및 돌출간판 매장 내·외부 사인물, 배너 등 (전면 4m 기준)
별도품목	-	-		-	-	익스테리어, 전기증설, 냉난방, 음향시설 등

가)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외장공사 및 내부옵션공사, 별도공사,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나)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사업자 선정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감리 비용으로 아래 명시된 금액을 착공 전까지 당사에 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기준 : 33㎡,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6,000			
감리비	가맹본부	3,000	착공 전	공사 전	3.3㎡당 200 (가맹사업자가 자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실사 및 도면 작성비	가맹본부	3,000	착공 전	소멸성	매장 실사 및 도면 작성 비용

⑤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귀하가 좋은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최종 입지 선정의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당사는 입지선정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1. 귀하가 입지를 선택한 경우 : 기존 가맹점 영업지역 침해여부와 시장분석 후 개점 허가. 만약 조건에 맞지 않으면 거절 또는 변경 권유. 2. 입지 선정을 본부에 요청할 경우 : 담당자 배정 → 현장조사 → 입지 제안 → 가맹희망자(가맹사업자)의 책임으로 최종 결정 3. 가맹본부가 입지를 선정한 경우 : 입지 제안 → 가맹희망자(가맹사업자)의 책임으로 최종 결정 ※ 가맹점사업자의 변심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맹본사가 제공한 입지 분석업무에 해당하는 비용은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선정할 수 있으나, 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⑥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식품위생법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식품위생법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만18세 이상일 것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서 필요)

⑦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⑧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은 분납할 수 없으며,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①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0~31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매월 150	매월 5일까지 (선불)	미반환	소멸성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V. 9. 광고 및 판촉 활동 내용 참고	광고 30일전까지	광고 미집행	광고 집행	V. 9. 광고 및 판촉 활동 내용 참고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판촉 30일전까지	판촉 미집행	판촉 집행	
매장 내·외부 사인물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100%	사인물 수령 5일전까지	미반환	제작비로 소멸	
영업표지 변경비용	가맹본부	BI 개발비 본사부담. 가맹점 표지 변경비용은 협의	협의	미반환	표지설치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교육비	가맹본부	실비	가맹계약시	교육개시1 일전 해지	교육 개시 후 반환불가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또는 선정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변경 완료 3일 전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6%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②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③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매출향상을 위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매장관리	① 매출 및 손익분석 경영지원 ② 품질, 위생, 서비스 점검 ③ 매장 시설 및 위생 점검 ④ 고객 클레임 처리 ⑤ 미스터리 쇼퍼를 통한 개선점 분석	월 1회 이상	문의 : 본사 (051-624-7004)
재고관리	① 실재재고 수량과 장부상 재고 비교 ② 재고관리 교육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①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②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최초가맹계약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최초가맹계약기간이 초과한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을 양수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가맹본부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최초가맹계약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최초가맹계약기간이

초과한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을 양수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때, 최초가맹계약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최초가맹계약기간이 초과한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을 양수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OPPA COFFEE(오피피에이 커피)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양수인이 가맹본부의 가맹점허가 기준에 미달할 시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양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교육비 5,000,000원(부가세별도)입니다. 또한 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8쪽에 나와 있습니다.

④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무상 대여 품목 등은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나) 전항의 철거, 원상복구, 반환의 비용은 귀하의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가맹본부가 전항의 내용을 집행하는 경우 소요된 실비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하거나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사업자는 전화번호 등록 및 인터넷 상의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한 사항에 대하여 삭제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폐업 사실증명서'를 가맹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나 관련회사에 지불하여야 하는 모든 금액을 계약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유통기한, 오·훼손 상태등 관리상태를 고려하여 일정범위 내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반품 불가 기준 : 유통기한 3개월 미만, 포장재 또는 스티커 훼손, 원두 종류, 냉동·냉장 제품, 개봉·사용 제품, 박스단위 출고품의 날개 반품)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① 귀하가 OPPA COFFEE(오피피에이 커피)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 ②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OPPA COFFEE(오피피에이 커피)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

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① 당사는 OPPA COFFEE(오피피에이 커피)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 ② 당사가 OPPA COFFEE(오피피에이 커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①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별첨1]	-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레시피와 품질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해야 함 - 가맹본부 브랜드 통일성 및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지정한 제품 및 서비스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1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3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4회 위반 : 계약 해지 ※ 시정요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24시간 이내) 시정하여야 한다.

시장상황(경쟁브랜드의 영향 또는 경제상황) 또는 가맹점상황(가맹점의 위치, 크기, 고객성향 등)에 따라 가맹본부가 제안하는 메뉴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임의로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거나 상품·용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②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소비자 이외의 제3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모든 물품, 상품, 서비스 등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경쟁업체			2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다른 가맹점사업자			3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4회 위반 : 계약 해지 ※ 시정요구를 받은 즉시 제한받은 판매행위를 중단 하여야 한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③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1]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별첨1]에 기재된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①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커피 또는 커피와 관련된 형태의 식음료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②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영업공간으로 사용되는 가맹점포의 실내벽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반경을 영업지역으로 한다.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
다만, 가맹계약 시 영업지역에 대해 협의한 경우 그 내용에 따른다.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

③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 서면 통지 → 30일 이내 동의 여부 회신 →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④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OPPA COFFEE(오피피에이 커피)’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⑤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OPPIA COFFEE(오피피에이 커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⑥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①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 ②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①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OPPA COFFEE(오피피에이 커피)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 ②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③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③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을 포함한 대금지급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37조 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판매하는 제품·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법 또는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통상적인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물류보증금의 80%를 초과하는 금액을 미수로 하거나, 대금의 종류와 상관없이 대금지급을 2회 이상 지연한 경우	

④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①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통상적인 가맹활동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채무를 포함한다)이 계약이행보증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②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해당 채권이 제3자에게 의하여 압류·가압류된 경우 ③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④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의 지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등 가맹본부의 예치가맹금 수령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⑤ 가맹본부가 지정한 메뉴의 제품명, 가격, 수량, 규격을 변경하거나 가맹본부가 지정하지 아니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⑥ 가맹점사업자가 자점매입하거나 공급받은 물품을 소비자 이외의 제3자 또는 경쟁업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⑦ 통일성 있는 브랜드 관리를 위하여 가맹점의 품질검사 또는 영업관리를 위한 가맹본부의 직원 또는 가맹본부가 위임한 제3자의 관리·조사행위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⑧ 가맹점사업자가 고객 클레임 또는 가맹본부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도 지체없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⑨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위생, 안전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불가피하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환경개선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 ⑩ 가맹점사업자가 본인이 고용한 직원에 대하여 교육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⑪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나 가맹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소모품이나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⑫ 가맹계약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⑬ 가맹본부가 별첨[3] 에서 지정하지 아니한 원·부재료(컵, 홀더, 포장지 등을 포함)를 사용하는 경우 ⑭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서 제30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계약서 제38조 1항
가맹계약서 제30조 제1항 1.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해당사유를 적시한 서면으로 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원·부재료 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위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가 해당사유를 시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6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원·부재료·공급품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②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③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6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④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⑥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⑦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서 별첨[5] 의 금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금지행위로 인해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로 본다.	가맹계약서 제38조 4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맹계약서 제38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로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절제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⑤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 수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와 귀하의 상호 합의하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하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계약기간 중 계약 내용의 수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가맹계약 갱신 기간중에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을 통지하여 변경된 조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①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가 없습니다.

②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사전 서면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때, 귀하가 제시한 양수인이 당사의 가맹사업 파트너로 적합(신규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판단함)하지 않으면 당사는 양수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신규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양수인이 당사의 가맹사업 파트너로 적합할 것 (당사는 양수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 본사 (051-624-7004)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가맹비(영업표지 등에 대한 사용권 등)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③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는 등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신규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양수인이 당사의 가맹사업 파트너로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 신규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양수인이 당사의 가맹사업 파트너로 적합할 것 - 가맹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인이 상속사실을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 → 가맹본부 검토 → 승인여부 통지 → 상속인과 가맹본부의 상속 계약 체결	교육수료 /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 신규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대리인이 당사의 가맹사업 파트너로 적합할 것 - 가맹본부 승인시 가능	지정된 범위의 권리의무	-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승인 하에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때 대리인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함	교육수료 /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불가능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①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 전 지역에서 귀하가 OPPA COFFEE(오피피에이 커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커피와 차를 판매하는 업종 ○ 동일 업종의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 본사 (051-624-7004)

②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OPPA COFFEE(오피피에이 커피)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가맹점의 입지조건 등에 따라 협의하고 있으나, 모든 가맹점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가맹점에 따라 다름	- 원칙 : 연중무휴 영업 - 예외 : 명절 당일영업은 선택사항	문의 : 본사 (051-624-700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③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다음과 같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수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직접근무(권장)	- 정직원 또는 파트타임 포함 1명 이상 (개점 후 1년간 가맹점주가 일일 영업시간 50%이상 현장근무 하는 것을 권장)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	
관리만 할 경우	- 정직원 1~2명과 파트타임 2명 이상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	

④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 · 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매장 환경 시설/기계장비 근무자 점검 (교육/서비스/위생) 레시피 / 재료 그 외 운영감독	담당자 매장 방문 → 관리 항목 확인 → 관리표 작성 → 근무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월 1회 이상	본사
미스터리 쇼퍼	미스터리 쇼퍼 매장 방문 → 관리 항목 확인 → 보고서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 → 완료	수시	본사 또는 제3자

9. 광고 및 판촉 활동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OPPA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 브랜드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전원이 균등하게 부담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 브랜드광고 + 가맹점모집 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전원이 균등하게 부담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행사	할인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증정/무료 행사				
	팸플렛 등 제작				
	기타 개별행사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국단위 광고의 경우 전국 가맹점사업자 전원이 균분하여 부담하고, 지역단위 광고일 경우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 전원에게 균분하여 부담합니다.

②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브랜드의 상표나 디자인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사전에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경영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	
1.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로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제 39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 금삼십만원정(₩300,000)의 지체배상금을 부담한다. 3. 가맹본부가 별첨[3]에서 지정한 원·부자재 이외의 원·부자재를 사용하거나, 가맹본부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상품 또는 제품을 매장에서 또는 배달서비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약별로 금이천만원정(₩20,000,000)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4.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약별로 각 금사천만원정(₩40,000,000)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연이자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①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40조(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39조(계약의 종료와 조치)를 위반한 경우 5.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약별로 각 금이천만원정(₩20,000,000)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연이자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①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② 가맹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③ 가맹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자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6. <u>가맹점사업자의 책임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이것이 언론이나 인터넷에 노출이 되어 가맹본부 및 가맹브랜드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위약별로 5,000만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연이자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u> ① <u>종이컵, 페트컵, 빨대와 같은 1회용품을 재사용 하여 영업하는 경우</u> (세척하더라도 절대 재사용할 수 없음) ② <u>버려진 음식물, 유통기한이 지난 원·부재료,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더라도 위생상 문제가 있는 원·부재료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경우</u> ③ <u>그 외 위생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불쾌함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u> 7.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매출감소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8. 가맹점사업자가 임의로 영업을 휴업하는 경우, 위약별로 1일당 10만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9. 본 계약 체결 후, 가맹점 개설 이전에 상대방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가맹금의 일부를 위약별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조건	위약별 내용
계약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	최초가맹금의 10%
계약일을 포함하여 3일 경과 9일 이내	최초가맹금의 30%
계약일을 포함하여 9일 경과 개점 이전	최초가맹금의 50%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60일 내외	10~13P 확인
가맹문의·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60	
상권분석 및 점포개발	- 상권분석 및 점포검토	필요시 실시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	-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정한 금융기관에 가맹금 예치	D-44~45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45 ~ 43(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42~40(3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35 ~ 6(3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32 ~ 3(30일)	
기계 및 집기	- 기계설비 설치 - 집기 및 초도물품 납품	D-10~2(9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가맹본부의 경험으로부터 추정된 기간이며, 협의 과정 또는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 - 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합의 하에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점포환경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가맹점주님과 협의하여 판매촉진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점포환경 분석 -시설, 기계 점검 -위생, 품질 관리	가맹본부가 경영지도계획서(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 본사 (051-624-7004)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고객서비스 관리 -직원관리·교육지도 -회계 등 운영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OPPIA COFFEE(오피피에이 커피)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소상공인대출	기업은행	최대 2천만원	신용대출	해당은행 카드매출계좌 사용시

구체적인 신용제공 조건은 귀하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 지원을 원하는 경우 051-627-9285로 상담하기 바랍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가맹점 지원제도	가맹점의 월매출이 부진할 때, 본사에서 무상으로 재료를 지원함	가맹점의 월매출이 1,000만원 미만일 때	① 10호점까지 개업 후 2년간 ② 11호점부터 개업 후 1년간	(1천만원-월매출)의 15%에 해당하는 재료 무상지원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OPPA COFFEE(오피피에이 커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 브랜드 소개 - 커피 교육 (이론, 실습) - 기계 교육 (이론, 실습) - 메뉴 교육 (이론, 실습) - 서비스 교육 - 현장실습, POS교육 - 세무, 노무, 물류 등 운영교육	이론 → 실습 → 현장실습	개점 전	필수 교육
보수 교육	- 기본교육 - 운영이슈에 대한 교육 - 신메뉴 교육 등	실습위주 교육 필요시 이론 교육	정기 / 필요시	필수 또는 선택사항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OPPA COFFEE(오피피에이 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7일	5,000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1일 이상 (교육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	실비 책정 후 가맹사업자에게 통지	필수적으로 이수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점사업자는 반드시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수료할 때 까지 개점이 연기될 수 있으며, 교육을 수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필수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불참시 해당 내용에 준하는 추가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해당사항 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해당사항 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해당사항 없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051-624-7004)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가맹점사업자의 판매 제한받는 제품·상품·용역 목록

구분	품 명	컵 기준 단위(oz)	가격
		Large (Hot/Iced)	Large
커피	에스프레소	-	-
	아메리카노	16/20	1,800
	아메리카노(1L)	32 (1L)	2,800
	스페셜티 아메리카노	16/20	3,000
	카페라떼	16/20	2,800
	바닐라라떼	16/20	3,400
	헤이즐넛라떼	16/20	3,400
	모카치노(카페모카)	16/20	3,400
	카라멜마끼아또	16/20	3,400
B R E W	더치커피	16/20	2,800
	더치라떼	16/20	3,400
	더치바닐라	16/20	3,900
	더치헤이즐넛	16/20	3,900
	더치모카	16/20	3,900
	더치원액	320ml	원산지별 가격상이
원두	싱글오리진 원두	200g	원산지별 가격상이
	에스프레소 원두	1kg	27,500
티	유자차	16/20	3,000
	로얄피치아이스티	20	3,300
	레몬리치아이스티	20	3,300
	루이보스스트로베리 크림향	16/20	3,500
허브티	와일드베리즈	16/20	3,500
	캐모마일메도우	16/20	3,500
	로얄얼그레이	16/20	3,500
	바바리안민트	16/20	3,500
	자몽블랙티	16/20	4,000
	유자캐모마일티	16/20	4,000
	제주유기농녹차라떼	16/20	3,800
	고구마라떼	16/20	3,800
라떼	초코라떼	16/20	3,800
	로얄얼그레이밀크티라떼	16/20	3,800
에이드	생레몬에이드	20	3,800
	청포도에이드	20	3,800
	자몽에이드	20	3,800
	한라봉에이드	20	3,800
스무디	플레인요거트	20	4,100
	딸기요거트	20	4,100
	블루베리요거트	20	4,100
	딸기초코스무디	20	4,400
	코코넛커피스무디	20	4,800
	딸기코코넛스무디	20	4,800
프라페	제주녹차프라페	20	4,100
	초코프라페	20	4,100
	딸기주스	20	4,000
과일 주스	블루베리주스	20	4,000
기타	샷 추가	20g	500
	시럽/토픽 추가	20g	600

매장 및 상황에 따라 위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첨2] 최근 3년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021~2023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별첨3] 공급 원·부재료 등의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별첨4] 공급 주방기기의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